

세대간 이전: 자녀의 부모부양이 부모의 상속결정에 미치는 영향*

Intergenerational Transfers:
The Influence of Children's Support for Parent on Parents' Bequest Decisions

충남대학교 소비자생활정보학과

교수 김순미**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Consumers' Life Information
Professor Kim, Soon-Mi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intergenerational transfer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is a major concern due to low birth rates and aging society of Korea.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nfluences of children's support for parent regarding parents' decision to bequest, including the influences of parental characteristics, household-related factors, and characteristics of children. The data are the 5th wave of KReIS, a sample of 1,834 married household heads(HHs), which were classified into 142 baby boomers (1955-1963), 534 post-liberation HHs (1945-1954), and 1,158 Japanese-era HHs (-1945).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49.3% of baby boomer HHs, 59.2% of post-liberation HHs, and 59.1% of Japanese-era HHs, were willing to make bequest decision. Second, in the baby boomer HHs, although the children's contact with their parents represented an emotional resource transfer, a child's economic resource transfer to his/her parents did not affect the parents' bequest decisions. However, in the post-liberation HHs, children's contact with parents, and economic resource transfers were significant variables. In addition, in the Japanese-era HHs, only children's contact with their parents was a significant variable. Third, in the baby boomer HHs, the variables that influenced parents' bequest decisions were household financial assets and having a daughter

* 본 논문은 2014년도 충남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주저자, 교신저자: 김순미(kimsm@cnu.ac.kr)

rather than having son and daughter. However, the variables that heavily influenced bequest decisions of the post-liberation HHs were the presence of a spouse, home ownership, household expenditures, and satisfaction of relationships with children. In the Japanese-era HHs, the variables that significantly affected parents' bequest decisions were home ownership, household expenditures, and household financial assets.

Key Words : 세대간 이전(intergenerational transfers), 부모의 상속결정(parental decision to bequest), 자녀의 부모부양(children's support for parent)

I. 서론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세대간 형평성과 상호의존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사회적 측면에서 저출산 세대와 고령화 세대 간의 사회보장체계를 불균형하게 만들었고, 가정적 측면에서 고령화 세대 부모가 교육, 취업 및 결혼이 늦어진 저출산 세대 자녀에게 자신의 노후부양을 의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전통적 가족구조에서 부모부양은 자녀의 책임이었고, 부모는 이에 대한 보상으로 자녀에게 자원을 양도하거나 상속하였다. 이처럼 고령화 세대는 부모부양을 가족의 의무로 여기지만 저출산 세대는 개인의 책임이라 여기고 있어 세대간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김은정, 2013). 이에 자녀의 부모부양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 부모들은 자신의 노후부양을 위해 자녀에게 증여할 재산을 유보하거나 일부만을 증여하는 방법, 또는 부모자녀간 상호의존성이 전제된 자녀의 부모부양 여부에 따라 재산을 상속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한경머니(2016)가 50대, 60대, 70대 이상 부모 각 100명과 20대, 30대, 40대 자녀 각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증여와 상속 태도를 보면, 부모의 61%는 아직 증여나 상속에 대해 구체적 계획이 없다고 한 반면에 자녀의 55.0%는 사전 증여를 선호하여, 증여와 상속에 대한 부모와 자녀의 태도가 서로 다른

을 보여주고 있다(한경Business, 2016).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2년에 실시한 유산상속 국민인식조사를 보면, 부모는 건강이 나빠지거나 기대수명이 길어지면 효도한 자녀에게 상속하겠다는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에게 무조건적 상속이 아니라 상호 자원이전을 전제로 상속하겠다는 것으로써, 자녀의 부모부양이 부모의 상속동기에 작용하는 것을 보여준다(김현식, 황선재와 김윤희, 2012).

상속과 부모부양은 부모자녀의 세대간 이전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상속은 부모가 자신의 자원을 자녀에게 제공하는 세대간 이전인 반면, 부모부양은 자녀가 자신의 자원을 부모에게 제공하는 세대간 이전이다. 이처럼 상속과 부모부양은 세대간 이전의 방향과 시기가 다르지만 상호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1991년 개정된 우리나라 상속법에 의하면, 재산분할에서 자녀가 부모를 특별히 부양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기여분제도를 통해 더 많은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한다(민법 1008조의 2)(김주수·김상용, 2013). 이는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나 간호, 기타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자에 대해 기여정도를 가산한다는 의미이다. 또 법원은 ‘특별히 부양한다’는 의미를 넓게 해석하여, 부모와의 동거가 흔했던 과거에는 부모의 일이나 생활비 지원을 특별한 부양으로 인정했지만 핵가족화 되면서 동거나 정기적인 돌봄도 특별히 부양

한다는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머니투데이, 2016). 이처럼 부모의 상속결정과 자녀의 부모부양의 관련성은, 상속근거를 혈연(63.42%)과 근친자의 부양(24.35%)이라고 한 정동호(2012)의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녀의 부모부양이 부모의 상속결정에 미치는 영향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이후 시작된 상속관련의 국내 선행연구는 상속의식이나 상속실태에서 출발하여(문영소·김양희, 1999; 신화용, 조병은과 Walker, 1997; 이정음·김명자, 2001), 상속동기(김용진, 2013; 신중협, 2016), 상속형태(김현식·황선재, 2013), 상속세 및 상속제도(강석기, 2016; 구분친, 2015), 상속관련 요인(강유진, 2012; 김용진, 2013; 김혜경, 2008) 등의 연구로 이어지고 있으며, 부모부양과 상속의 관계(강유진, 2012; 김혜경, 2008; 조병은, 2003)를 다룬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세대간 이전의 측면에서, 부모의 상속결정에 대한 자녀의 부모부양의 영향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둔다. 특히 우리나라 부모세대가 갖고 있는 부모부양과 상속의 개념은 연령과 사회적 배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부모 연령을 구분하여 세대로 상속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부모의 상속결정에 대한 영향요인이 부모의 특성이나 가구관련 요인인지, 또는 자녀의 특성이나 부모부양 요인인지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으며, 연구결과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개별 가정의 세대간 이전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나아가 세대간 이전의 사회적 변화추이와 불균형을 예측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세대간 이전

세대간 이전(generational transfer)은 한 세대에

서 다른 세대로 자원이 이전되는 것이며, 세대간 자원의 형평성에 기초한다. 세대간 자원의 형평성은 세대간 균형과 상호의존성을 취하면서 선 세대와 후 세대간의 부담을 공평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대간 형평성을 취하기 어려운데, 개별적 독립성에 기반을 둔 서구사회의 가족구조와 달리 상호의존성에 기반을 둔 우리나라의 가족구조가 동등한 기회나 독립성을 약화시켜 세대간 자원의 불균형을 초래하기 때문이다(강성호, 2013; 이기영, 2012; 황남희, 2012).

세대간 이전은 이전의 주체와 대상, 이전방향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된다. 이전의 주체는 정부, 가족 및 본인 이외의 집단이 제공하는 공적이전과 개인 및 가족 간에 특별한 반대급부나 수혜자격없이 제공하는 사적이전이 있다. 공적이전에는 공적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노령연금, 사회수혜금, 사회적 현물이전 등이 포함되며, 사적이전에는 개인이나 가구에서 세대내 이전, 세대간 이전, 가구내 이전, 가구간 이전, 친인척 또는 이혼한 전 배우자, 다른 가구, 비영리조직과의 이전이 포함된다(김영순, 2013; 오윤희, 2016). 이전의 대상인 자원은 공간(동거), 시간(시간제공, 돌보기 제공), 금전(선물, 현금, 기타 금전적 지원) 등이 있으며(고선강, 2005), 금전이나 물질을 제공하는 경제적 이전, 신체적 독립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구적 이전, 감정과 정서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정서적 이전으로 구분하기도 한다(김순미·박미려, 2008). 공적이전의 자원은 주로 경제적 자원이지만 사적이전의 자원은 경제적 자원, 도구적 자원, 정서적 자원 등이 있다. 또 이전의 방향은 쌍방향, 수혜형, 지원형, 무교환형으로 구분된다(김영순, 2013).

그간 우리나라는 세대간 이전의 형평성을 파악하기 위해 공적이전에 주된 관심을 두었다. 그러나 공적이전의 선 세대와 후 세대가 각자 입장을 내세우는 대결적 관점으로 확산되면서, 선 세대가 후 세대에게 이전하고 후 세대가 선 세대에게 이전하는 상호의존성 관점의 사적이전에 대한 관심이 증

가하고 있다(오건호, 2011). 사적이전은 성인부모와 어린 자녀, 노부모와 성인자녀 등과 같이 연령이나 세대가 다른 집단 간의 상호의존성에 따라 자원이 이전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세대간 이전의 개념을 사적이전으로 한정하며,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자원이 이전되는 상속과 자녀로부터 부모에게 자원이 이전되는 부모부양을 포함한다(강성호, 2013; 이기영, 2012; 황남희, 2012).

2. 상속개념과 이론

상속은 일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사이에서 한 개인이 사망하였을 때 그가 생존시 소유한 재산의 권리, 의무 일체를 이어받는 법률적 개념으로, 과거 법적 명칭은 재산상속이었으나 1990년 민법 개정 이후 상속으로 변경되었다(김주수·김상용, 2013; 박동섭, 2013). 따라서 현재 사용되는 상속개념은 부모세대로부터 자녀세대에게 자원이 이전되는 사적이전을 말하며, 한 세대를 기점으로 부모로부터 받는 유산(inheritance)과 자녀에게 주는 유산상속(bequest)으로 분류할 수 있다(홍공숙·김순미·김연정, 1995).

상속은 상속주체인 부모의 생존여부에 따라 사전상속(死前相續)과 사후상속(死後相續)으로 구분된다. 사전상속은 부모와 자녀의 전 생애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증여형태를 취하며, 자녀의 생애주기에 따라 이전자원이 다르다. 유아기에는 부모의 도구적 자원과 정서적 자원의 이전비중이 크지만 청소년기에는 인적자본투자를 위한 경제적 자원의 이전비중이 증가한다. 청년기에는 도구적 자원, 정서적 자원, 경제적 자원의 이전비중이 감소하지만 자녀가 학업 중이거나 미취업 상태인 경우에는 경제적 자원이전이 지속되거나 증가하기도 한다. 성인기에는 대부분의 자원이전이 감소하지만, 자녀의 독립이나 결혼으로 경제적 자원이전이 다시 발생하기도 한다(고선강, 2005; 조정문, 1991, 허경옥·유수현, 2014 재인용). 한편 사후상속은 부모가 사

망하면서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유산상속을 말한다.

상속은 형태와 동기에 따라 우발적 상속, 자발적 상속, 자본주의적 상속이 있다. 우발적 상속은 부모가 미래나 사망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부를 축적하지만 갑자기 사망하면서 자녀에게 부가 상속되는 것이다. 한편 자발적 상속은 부모의 명확한 인식하에서 자녀에게 부를 상속하는 것으로, 자녀에게 보상동기를 가지고 부를 이전하는 이타적 상속(altruistic bequest)과 자원의 상호교환을 목적으로 이전하는 전략적 상속(strategic bequest)이 있다. 이타적 상속은 가족원의 효용함수가 이타적 가족원의 효용함수를 결정한다는 이타주의(Becker, 1991)에 근간을 둔 것으로, 이타적인 부모의 안녕감 수준은 이기적인 자녀들의 안녕감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반면 전략적 상속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손실은 피하고 보상을 얻는 방향으로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교환이론(Sabatelli & Shehan, 1993)에 근간을 둔 것이며, 부모자녀의 상호호혜성은 즉각적 보상이든 미래 보상이든 간에 자신이 제공한 자원에 대한 보상이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이윤정·고선강 2011에서 재인용). 부모와 자녀간 완전한 이타주의가 성립한다면, 상속보다는 증여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미국의 많은 부자들은 증여보다 상속을 하는데, 그것은 자녀서비스를 유도하기 위해 목시적인 상속을 약속하여 사망할 때까지 자원을 보유하는 것이다(Becker, 1974, Bemheim, Shleifer & Summers, 1985, 정지영·양세정 2013에서 재인용). 마지막으로, 자본주의적 상속은 부의 축적과정에서 나타나는 상속이며 자본가들에게서 볼 수 있다(Masson & Pesticau, 1997, 김현식·황선재, 2013에서 재인용).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부모세대 뿐 아니라 자녀세대도 상속계획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있다. 김은정(2013)은 이미 재산상속을 받았거나 독신 또는 자녀계획이 없어 자녀상속과 무관한 경우를 제외한 20세 이상 남녀 2,003명

을 대상으로 상속기대도와 상속계획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체응답자의 약 63%는 상속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연령이 높은 집단일수록 상속기대도가 낮았다. 또 전체응답자의 20%는 상속계획이 없었으며, 연령이 증가하면서 상속계획이 없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가족내 상속갈등에 대해서는 전체응답자 64%가 부모가 오래 살면서 상속하지 않거나 미루면 가족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고 고령 세대가 젊은 세대보다 상속관련 갈등을 더 심각하게 인지하였다.

상속은 상속 주체인 부모특성이나 가구관련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상속 대상인 자녀특성, 그리고 상속의 주체와 대상이 공유한 관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김용진, 2013). 예를 들면, 이타적 부모는 자녀들의 미래의 소득능력과 생애자원을 걱정하기 때문에 인적자본이나 경제적 자원이 열악한 자녀에 대한 보상동기로 상속을 결정한다(홍공숙 외, 1995). 또 저출산으로 인한 자녀 수 감소는 부모자녀 관계를 밀접하게 만들어 부모의 상속동기를 강화시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와 자녀의 개인주의화로 부모의 상속동기를 약화시키기도 한다(김은정, 2013; 김현식 외, 2012).

이러한 배경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상속개념은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우발적 상속과 자발적 상속을 포함한다.

3. 부모부양

과거 우리나라의 부모부양은 가족주의와 효에 근간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가족구조, 가치관, 여성의 사회진출 등의 변화로 상호의존성에 기반하는 부모부양 인식은 점차 약화되었고(하석철·홍경준, 2012, 하석철, 2016), 자녀의 부모부양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식한 고령화 세대의 부모들은 새로운 대응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부양은 개인 및 가족이 주체가 되는 사적부양 외에 정부가 주체가 되는 공적부양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공적부양의 적정성과 충분성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며, 사적부양이 공적부양보다 우선한다는 사회적 견해가 지배적이다(김상용·김주수, 2010). 통계청의 사회조사(2015)에서 60세 이상 고령자가 생활비를 마련하는 방법으로 본인 및 배우자부담이 66.6%, 자녀 또는 친척지원이 23.0%, 정부 및 사회단체지원이 10.4%의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2013년과 비교할 때, 본인 및 배우자부담과 정부 및 사회단체 의존이 각각 3.0%, 2.8% 증가한 반면, 자녀 및 친척지원은 28.8%에서 5.8%가 감소한 것으로, 자녀 및 친척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 준다.

부양은 법과 제도, 역사, 문화 등에 따라 다양성, 역동성, 조직화 방식이 다르다(Power, 2010). 우리나라 민법에서 부양은 부부간의 부양의무(민법 제 826조 제1항), 친족 간의 부양의무(제974조), 부모의 미성년의 자에 대한 부양의무 등을 포함하며, 특히 생활유지의무를 1차적 부양의무, 생활부조의무를 2차적 부양의무로 간주한다(김주수·김상용, 2013; 박동섭, 2013). 이처럼 부양은 생활유지의무의 경제적 지원(financial support)과 생활부조의무의 돌봄(care)이라 할 수 있다. 경제적 지원은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제공하는 것으로, 식생활, 의복, 주거 및 그에 필요한 비용, 당사자의 사회적, 경제적 수준에 상응하는 문화적 생활 및 그에 소요되는 비용, 인간적 교류의 유지 및 그 수단에 소요되는 비용, 직업을 구하거나 직업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비 및 그에 수반되는 비용,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얼마간의 용돈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직접 돌보거나 지출하는 금전 등이 포함된다(이경희, 2014). 반면에 돌봄은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역을 돕는 것으로, 돌봄 제공자와 수혜자 간의 존중과 정서적 교감의 상호작용을 통해 수행되어야 한다. 총체적인 삶의 질 유지를 위해 신체적이고 기능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안전을 보장하는 것으로써, 이때 개인의 잔존 능력유지와 개인별 취향이

강조된다(석재은, 2014). 가정적 측면에서 서구사회의 부모부양은 신체적, 정신적, 인지적으로 취약한 부모를 돌봄에 초점을 두지만, 우리나라는 부모의 취약성과는 무관하게 전통적 가치에 따라 경제적 돌봄, 정서적 돌봄, 서비스적 돌봄에 초점을 둔다(김미혜 · 신경림 · 강미선 · 강인, 2006, 김윤정 · 최혜경, 2000, 하석철, 2016에서 재인용).

이와 같은 부양개념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부모부양 개념은 생활유지를 위한 경제적 지원과 생활부조를 위한 돌봄으로 본다.

4. 상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상속에 관한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상속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홍공숙, 김순미와 김연정(1995)은 유산상속 결정을 유산상속 확률로 보았고, 김혜경(2008)은 노인의 유산상속과 사회적 지원의 관계를 파악하면서 유산상속을 상속상태, 상속계기, 상속시기, 상속방법으로 보았다. 또 배희선(2008)은 중·노년기 가계의 성인자녀에 대한 증여와 상속을 경제적 자원이전의 시기 및 이전여부로 보았으며, 강유진(2012)은 재산상속을 평등형, 전통형, 현실형, 비상속형 등의 상속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김현식, 황선재와 김윤희(2012)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유산상속 동기변화에 대한 연구에서 유산상속의 여부, 시기, 형태를 측정하였고, 김용진(2013)은 유산상속 의향을 유산상속 의향여부로 보았으며, 유산상속 선호형태에 대한 자녀동거의 영향에 대해 종단적 분석을 실시한 김현식과 황선재(2013)는 유산상속형태를 상속방식, 상속대상, 상속동기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허경옥과 유수현(2014)은 경제자원이전을 최근 5년 이내의 무상지원, 상속예정여부를 향후 5년 이내 상속예정여부로 보았다.

한편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요인들은 <표 1>과 같이 부모특성, 가구관련 요인, 부모의 상속경험 및 태도 요인, 자녀특성, 자녀의 부모부양 요인으로

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부모와 자녀 간의 세대간 이전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상속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부모특성과 가구관련 요인, 자녀특성 및 자녀의 부모부양 요인으로 한정하고자 하며, 부모특성에는 연령, 성별, 교육수준, 배우자유무, 경제활동, 건강상태, 가구관련 요인에는 세대수, 거주지역, 주택점유형태, 가계경상소득, 가계소비지출, 가계금융자산, 가계부채, 경제적 독립 여부, 자녀특성에는 자녀관계만족도, 총자녀수, 자녀성별구성, 자녀혼인구성, 자녀거주상태, 자녀의 부모부양 요인에는 돌봄과 경제적 지원을 포함시키고자 한다.

부모특성에서 연령과 상속 관계를 보면, 결혼초기에는 유산상속 계획이 없으며 중기보다 후기로 갈수록 유산상속 가능성이 커진다(Bernheim, 1991, Kao, 1994, 홍공숙 외, 1995에서 재인용). 김혜경(2008)은 상속상태에 대한 성별의 영향에서, 전부상속은 여성의 비율이 높고 일부상속, 상속예정, 상속안함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각각 절반 정도이며, 상속방법 중 평등형은 남성의 비율이 높고 장남형은 여성의 비율이 높다고 하였다. 한편 김용진(2013)은 상속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특성으로 학력, 배우자유무, 직업관련 특성으로 고용 여부를 들었다. 부모학력이 높을수록 세대간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녀들의 경제적 복지를 개선하려는 이타적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유산상속 가능성이 높고, 부부가구는 이혼 및 사별가구보다 가족가치에 의미를 두어 유산상속 가능성이 높으며, 현재 경제활동을 나타내는 고용여부가 유산상속 결정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김혜경(2008)은 노인의 건강상태가 상속상태와 상속방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김용진(2013)은 신체적 건강이 유산상속 의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건강변수의 영향이 일관적이지 않다.

가구관련 요인을 보면, 김혜경(2008)은 세대수가 상속상태에 영향을 미쳐 전부상속 집단은 독거세대 혹은 장남중심 2세대 비율이 높고 일부상속 집

〈표 1〉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상속변수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선행연구		홍공숙 김순미 김연정 (1995)	김혜경 (2008)	배희선 (2008)	강유진 (2012)	김현식 황선재 김윤희 (2012)	김용진 (2013)	김현식 황선재 (2013)	허경옥 유수현 (2014)
		종속변수		유산상속 확률	상속상태 상속계기 상속시기 상속방법	중여/상속 이전시기 이전여부	재산상속 유형	상속여부/ 상속시기 상속형태	유산상속 의향여부	상속방식/ 상속대상/ 상속동기	무상지원/ 상속수혜 예정
독립변수	성별		○	○			○	○		○	
	연령		○	○	○		○	○	○	○	○
	교육수준		○	○			○	○	○	○	
	인종		○								
	고용(취업)여부							○	○	○	
	근로시간										○
	직업안정도		○								
	은퇴준비기간		○								
	결혼상태		○	○	○		○	○	○	○	
	건강상태(주관적 건강)			○			○	○		○	
	정신적(정서적) 건강		○						○		
	신체적 건강		○						○		
	ADL장애			○							
	자녀동거에 대한 태도			○					○		
가구 관련요인	가구형태			○							
	가족크기(가족수)		○								○
	가족주기										○
	맞벌이가계										○
	거주지역		○	○			○	○	○	○	○
	주택점유							○	○	○	○
	소득					○			○	○	○
	월생활비										○
	저축액										○
	현재주택지분		○						○		
	부동산(기타주택) 지분		○						○		
	자산(금융자산)					○					○
	주식/상호기금/신탁		○								○
	저축/예금(예적금/적립/거치식펀드)		○						○		○
	개인연금/보험/주식								○		○
	CD/정부채권/증권		○								
	회사채/지방채(국공채)		○						○		
	부채총액										○
	경제상태(주관적/경제적 독립)			○			○	○			
	위험감수도										○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									

〈표 1〉 계속

		선행연구		홍공숙 김순미 김연정 (1995)	김혜경 (2008)	배희선 (2008)	강유진 (2012)	김현식 황선재 김윤희 (2012)	김용진 (2013)	김현식 황선재 (2013)	허경옥 유수현 (2014)
		중속변수 독립변수	유산상속 확률	상속상태/ 상속시기/ 상속시기/ 상속방법	증여/상속 이전시기/ 이전여부	재산상속 유형	상속여부/ 상속시기/ 상속형태	유산상속 의향여부	상속방식/ 상속대상/ 상속시기	무상지원/ 상속수혜 예정	
(부모의) 상속경험태도	상속경험여부(상속액)								○		○
	성인자녀에 대한 교육비용 지출경험					○					
	성인자녀에 대한 결혼비용 지출경험					○					
	성인자녀에 대한 주거마련비용 지출경험					○					
자녀 특성	상속액	○									
	노후부양관						○				
	상속법지식					○					
	증여/상속세법지식					○					
	가족관계만족도						○		○		
(자녀의) 부모부양요인	자녀연령										○
	자녀수(성인자녀수)		○		○		○			○	○
	동거자녀수							○			
	자녀동거여부							○			
(자녀의) 부모부양요인	자녀성별구성(성별/혼인)				○						
	자녀서비스(부모에 대한) 자녀와의 접촉빈도						○		○		

단은 부부세대 비율이 높으며 상속안함 집단은 다른 집단보다 독거세대 비율이 높다고 하였다. 또 거주지역은 상속상태와 상속방법에 영향을 미쳐, 상속예정, 상속안함 집단은 대도시거주 비율이 높고, 전부상속, 일부상속 집단은 군읍거주 비율이 높으며, 평등형 상속은 대도시거주 비율이 높다고 하였다. 강유진(2012)도 도시에 거주할 때 전통형의 상속유형보다 평등형, 현실형, 비상속형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한편 김주영과 유승동(2016)은 부모세대의 주택점유가 부모의 재정적 안정성을 높이고 개인이나 가구의 후생증가를 유발하여 자녀세대에게 이전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으며, 박민지 외(2014)는 우리나라 가계의 재산보유 중 실물자산 비율이 높고 특히 주택비중이 크기 때문에 부모의 주택연금제도 이용이 상속자산 규모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허경옥과 유수현(2014)은 부모의 상속예정여부에 따른 가계월평균소득, 월평균 생활비, 금융자산액, 가계부채총액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가계월평균소득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월평균생활비, 금융자산액과 가계부채총액은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또, 경제자원이전 및 상속예정여부에 대해 가계월평균소득과 월평균 생활비는 유의하지 않은 반면 가계자산은 유의한 변수라고 하였다. 정지영과 양세정(2013)은 부모가 자신의 생활비, 의료비 및 모든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자립도가 부모의 상속결정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자녀특성을 보면, 김용진(2013)은 부모가 인지하는 자녀와의 관계만족도가 높을수록 유산상속 가능성이 큰데, 그것은 자녀관계만족도가 자녀의 왕

래빈도를 높이고 부모의 규제에 순응하게 함으로써 교환의 대가가 작용하는 것으로 보였다. 한편 김현식 외(2012)는 자녀수 감소로 대변되는 저출산이 부모자녀 관계의 강화를 통해 상속동기를 유발시킨다고 보았고, 배희선(2008)은 딸보다 아들만 있는 가계일 때 사후상속보다는 사전증여를 하지만 자녀구성은 자녀에게 미래주거마련비용을 이전한 가계와 미래 기타증여액을 이전한 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한편 자녀혼인구성과 자녀거주상태를 보면, 이운정과 고선강(2011)은 미혼자녀와의 동거여부는 미혼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경제적 자원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기혼자녀와 동거하지 않을 때보다 동거할 때 어머니의 기혼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이 더 많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혼인 및 동거여부가 경제적 자원이전과 관련이 있으며 나아가 부모의 상속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또 김현식과 황선재(2013)는 남성노인이 딸과 지속적인 동거를 할 때 유산상속 가능성이 높고 장자상속보다는 균분상속을 더 선호하며, 여성노인이 아들과 지속적인 동거를 할 때 장자상속에 대한 의도가 높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보다 효도한 자녀에게 유산상속을 한다고 하였다.

부모부양 요인은 크게 돌봄과 경제적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강유진(2012)은 돌봄에 정서적 지원, 도구적 지원, 신체적 지원, 경제적 지원을 포함하였고, 정서적 지원과 신체적 지원은 전통형 상속의식보다 비상속형에 속할 가능성이 크며 도구적 지원은 평등형, 부분상속형과 비상속형에 속할 가능성이 크고, 경제적 지원은 전통형 상속의식보다 평등형, 부분상속형, 비상속형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 또 돌봄을 연락빈도와 방문빈도로 보고, 전화빈도가 높으면 전통형 상속유형보다 평등형, 부분상속형, 비상속형을 선택할 가능성이 낮고, 방문빈도가 높으면 전통형보다 평등형과 부분상속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여 부모부양의 돌봄 유형과 방법이 상속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

다. 한편 고선강(2013)은 중년기 자녀가 노부모에게 경제자원을 제공하는 것은 앞으로 부모로부터 경제자원 제공에 대한 대가, 즉 유산상속이나 자산증여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때문이라고 하여 경제적 자원이전과 상속결정의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부모의 상속결정에 대한 자녀의 부모부양의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의 부모부양과 부모의 상속결정 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자녀의 부모부양과 부모의 상속결정의 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부모부양이 부모의 상속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넷째, 부모특성, 가구관련 요인, 자녀특성 및 부모부양 요인이 부모의 상속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자료 및 표본

분석자료는 2013년 국민연금연구원이 실시한 제5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ReIS)이며, 전국 만 50세 이상의 가구원이 있는 6,405가구와 개인 11,471명의 노후생활 정보를 담고 있다. 표본추출을 위해, 개인 중에서 부모의 상속결정과 자녀의 부모부양에 대해 응답할 수 있도록 1인 이상의 자녀를 둔 기혼가구를 추출하였으며,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생존한 기혼가구, 공교육비의 지출 대상이 되는 자녀가 있는 기혼가구, 이미 자녀에게 상속한 기혼가구는 제외하였다. 그것은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자원이전을 받지 않고 부모부양이 가능한 자녀를 둔 기혼가구로 한정하기 위함이다. 또 부모부양과 상속에 대한 인식은 연령과 사회적 성장배경(배희선, 2008)에 따라 다

르므로 세대구분과 관련된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조사대상을 구분하였다. 이은희 외(2015)는 세대별 가계경제구조 비교분석을 위해 해방·전쟁세대, 베이비붐세대, 민주화세대, X세대, 에코세대로 구분하였고, 강소량과 최은영(2016)은 이은희 외(2015)의 연구를 재구성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이전과 이후 세대간 비교분석을 위해 해방전쟁세대(1941년-1954년), 베이비붐 세대(1955년-1963년), 민주화세대(1964년-1972년), 2차 베이비붐 세대(1968년-1974년)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는 기대수명이 길 것으로 예상되고 노후부양에 대한 관심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와 이전세대인 해방전쟁 세대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베이비붐 세대는 근대화에 따른 발전을 체감하기 시작한 첫 세대인데 반해, 해방전쟁세대(1941년-1954년)는 해방 전후와 6.25전쟁 종전 사이에 태어난 세대로 1960년 초반과 1980년 대 초중반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된 세대이다. 그러나 해방전쟁세대는 1945년 해방을 기점으로 사회적 성장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해방이후 세대와 일제강점기 세대(1910년의 국권 강탈 이후 1945년 해방까지)로 구분하였다(네이버사전). 이에 조사대상자인 기혼가구주는 베이비붐 세대(1955년-1963년), 해방이후 세대(1945년 8월이후-1954년), 일제강점기 세대(1945년 8월이전)로 분류되었다. 최종표본은 기혼가구주 1,834명이며, 베이비붐 세대 142명(7.74%), 해방이후 세대 534명(29.12%), 일제강점기 세대 1,158명(63.14%)이다.

3. 분석방법

부모특성, 가구관련 요인, 자녀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단순빈도와 백분율, 교차분석 및 χ^2 검정, 평균과 표준편차, 일원분산분석과 F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인 부모의 세대집단별 자녀의 부모부양과 부모의 상속결정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 일원분산분석과 F검정, 단순빈도와 백분율, 교차분석 및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자녀의 부모

부양과 부모의 상속결정의 관계는 평균과 표준편차, 일원분산분석과 F검정을 수행하였고, 자녀의 부모부양이 부모의 상속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 부모의 세대집단별 부모의 상속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앞서 변수들의 다중공선성은 피어슨의 상관계수로 확인하였고, 통계는 SPSS PC Statistic Program(Ver. 22)을 사용하였다.

4.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상속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을 요약한 <표 1>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정의와 측정방법은 <표 2>와 같다. 부모특성에서, 연령은 상속결정이 연령과 성장배경에 의해 달라진다는 배희선(2008)의 연구에 기초하여 베이비붐 세대, 해방이후 세대, 일제강점기 세대로 구분하였고, 교육수준은 학교등급으로 나누었다. 또 배우자유무는 김현식 외(2012)의 연구에 기초하여 결혼상태에서 이혼을 제외한 후 배우자있음과 사별로 구분하였다. 경제활동과 건강상태는 기혼가구주의 취업여부와 신체적 건강상태가 유산상속 의향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한 김용진(2013)의 연구에 기초하여, 경제활동을 취업과 비취업으로 구분하였고 신체적 건강상태는 현재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5점 리커드 척도로 측정하였다.

가구관련 요인의 세대수는 가구형태를 독거, 부부, 자녀중심, 기타로 구분한 김혜경(2008)의 연구에 따라 부부중심의 1세대와 부모자녀 및 기타의 2세대 이상으로 구분하였고, 거주지역은 농촌형이 도시에 비해 전통형의 상속경향을 보인다는 강유진(2012)에 근거하여 서울 및 광역시, 도의 두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주택점유형태는 김현식과 황선재(2013)의 연구에서 집소유가 유산상속 선호형

세대간 이전: 자녀의 부모부양이 부모의 상속결정에 미치는 영향

(표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부모특성인	
세대집단	출생년도를 기준한 세대구분 1. 베이비붐세대(50-58세) 2. 헤방이후세대(59-68세) 3. 일제강점기세대(69세 이상)
성별	성별 1. 남 0. 여
학력	1. 초졸이하 2. 중졸 3. 고졸 4. 대학이상
배우자유무	1. 유(배우자있음) 0. 무(사별)
경제활동	1. 취업 0. 비취업
신체건강상태	현재 신체건강상태 인식 1. 매우 좋지 않음 2. 좋지 않음 3. 보통 4. 좋음 5. 매우 좋음
가구관련 요인	
전체세대수	부모(기혼가구주)를 기준한 세대구성 1. 1세대 2. 2세대이상
거주지역	가구의 거주지역 1. 서울 및 광역시 0. 도
주택임유형태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보유상황 1. 자가 0. 전월세 및 기타
가계경상소득	가구의 연간경상소득(천원/년) (근로소득+금융소득+부동산소득+사적이전소득+공적이전소득)
가계소비지출	2012년 1년간 가구의 소비지출(천원/년) (식비+주거와 광열수도비+피복비+교통통신비+문화생활비+보건의료비+가구집기구입비+교육비+기타소비)
가계금융자산유무	현재 가구가보유한 금융자산총액(천원) 1. 유 0. 무 (예적금+개인연금 불입액+저축성보험 불입액+적립펀드납부금+주식투자금+유가증권+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아직타지 않은 갯돈)
가계부채유무	현재 가구가 보유한 부채총액(천원) 1. 유 0. 무 (금융기관/회사에서 빌린 돈+사채나 친인척에게 빌린 돈+주택임대하고 받은 전세금, 미래 부를 갯돈+미리 타고 앞으로 부를 갯돈+빚잔액+미이너스 장액+신용카드 할부액+현금서비스 등)
경제적 독립여부	타인의 도움에 의지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독립적 경제력 유무 1. 유 0. 무
자녀특성	
자녀관계만족도	현재 자녀와의 관계만족도(점) 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 만족
총자녀수	현재 생존하는 총자녀수(명)
자녀성별구성	1. 아들만 있음 2. 딸만 있음 3. 아들과 딸 모두 있음
자녀혼인구성	1. 기혼자녀만 있음 2. 미혼자녀만 있음 3. 기혼자녀와 미혼자녀 모두 있음
자녀거주상태	1. 모든 자녀와 동거 2. 모든 자녀와 별거 3. 동거자녀와 별거자녀 모두 있음
부모부양 요인	
돌봄(정서적 지원)	
전체자녀 부모왕래	각 자녀의 왕래빈도의 합 0. 거의 없음 1. 몇년에 한번 2. 1년에 1-2회 3. 6개월에 1-2회 4. 3개월에 1-2회 5. 1개월에 1-2회 6. 1주일에 1-2회 7. 1주일에 3-4회 8. 1주일에 5-7회
자녀1인당 부모왕래	전체자녀 부모왕래/총자녀수
전체자녀 부모연락	각 자녀의 연락빈도의 합 0. 거의 없음 1. 몇년에 한번 2. 1년에 1-2회 3. 6개월에 1-2회 4. 3개월에 1-2회 5. 1개월에 1-2회 6. 1주일에 1-2회 7. 1주일에 3-4회 8. 1주일에 5-7회
자녀1인당 부모왕래	전체자녀 부모연락/총자녀수
경제적 지원	
사적이전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녀(가족)들로부터 받는 보조금(천원/년)
자녀1인당 사적이전	사적이전/총자녀수(천원/년)
상속결정	
상속결정	자녀에게 상속/증여를 통해 재산을 남기기 원하는지 여부 1. 예 0. 아니오
상속/증여방법	자녀에게 남기고 싶은 상속/증여방법 1. 자녀수대로 균등 2. 동거부양자녀에게 많이(전부) 3. 별거해도 부양자녀에게 많이(전부) 4. 사업계승자녀에게 많이(전부) 5. 사업비계승자녀에게 많이(전부) 6. 비부양자녀라도 장남장녀에게 많이(전부) 7. 1인자녀이므로 그 자녀에게 전부 8. 기타
유산남기지 않는 이유	자녀에게 유산을 남고 싶지 않은 이유 1. 내가 생존하는 동안 모두 사용하려고 2. 자녀 외에 친족에게 남기려고 3. 기부하고 싶으므로 4. 유산을 남길 여유가 없으므로 5. 기타

태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여 주택소유여부로 측정하였다. 가계경상소득, 가계소비지출, 가계금융자산은 경제자원이전과 상속예정여부에 대한 가계월평균소득, 월평균생활비, 가계자산의 영향을 파악한 허경옥과 유수현(2014)의 연구에 기초하였고, 부채는 경제자원이전과 상속예정여부에 따른 집단별 가계부채총액이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결과에 근거하여 현재 가구가 보유한 부채유무로 보았다. 경제적 독립여부는 주관적 경제상태가 상속과 밀접한 관련을 보인 강유진(2012), 김현식 외(2012), 김혜경(2008)의 연구에 기초하여 기혼가구가 타인 도움없이 생활가능한 독립적 경제력의 유무로 구분하였다.

자녀특성에서 자녀관계만족도는 자녀와의 관계가 유산상속 의향에 정적 영향을 미친 김용진(2013)과 성인자녀에 대한 만족도가 유산상속 방식에 영향을 미친 강유진(2012)의 연구에 기초하여 선정하였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총자녀수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유산상속 결정에 부적 영향을 보인 홍공숙 외(1995), 유산상속여부에 미치는 아들 수 및 딸 수의 영향을 조사한 김현식 외(2012), 성인자녀수가 유산상속 방식에 영향을 미친 강유진(2012) 등의 연구에 기초하여 자녀특성에 포함하였다. 자녀성별구성은, 배희선(2008)의 연구에서 사전증여, 사후상속 및 혼합형(사전증여와 사후상속)에 영향을 미친 아들만 둔 가계, 딸만 둔 가계, 아들과 딸을 모두 둔 가계의 자녀성별구성으로 보았다. 자녀혼인구성은 어머니와 성인자녀간 자원이전을 경제적 지원과 돌봄 차원에서 보고 이에 대한 기혼자녀의 영향을 분석한 이윤정 외(2011), 유산상속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지원의 제공자를 장남부부, 그 외의 아들부부, 장녀부부, 그 외의 딸부부로 구분한 김혜경(2008)의 연구에 기초하여 기혼자녀만 있음, 미혼자녀만 있음, 기혼자녀와 미혼자녀 모두 있음으로 분류하였다. 자녀거주상태는 자녀동거에 대한 태도가 유산상속상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김용진(2013), 김혜경(2008), 그리고 유

산상속여부를 결정하는 동거 아들 수, 비동거 아들 수, 동거 딸 수, 비동거 딸 수의 영향을 분석한 김현식 외(2012)의 연구에 기초하여, 모든 자녀와 동거, 모든 자녀와 별거, 동거하는 자녀와 별거하는 자녀 모두 있음으로 구분하였다. 자녀의 부모부양 요인은 부모자녀간의 접촉정도(전화 및 방문)와 지원교환유형(정서적 지원, 도구적 지원, 신체적 지원, 경제적 지원)이 상속의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강유진(2012), 유산상속의향의 결정요인으로 자녀서비스(자녀 도움 받음)를 고려한 김용진(2013)의 연구에 기초하여, 돌봄을 자녀의 부모왕래와 부모연락, 경제적 자원이전은 자녀의 사적이전으로 보았으며, 이를 각 가구의 총자녀수로 나눈 자녀1인당 부모왕래와 자녀1인당 부모연락, 자녀1인당 사적이전으로 사용하였다. 이때 자녀의 부모왕래와 부모연락은 서열척도이며 표본의 차이가 아닌 상대적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분석에 사용된 평균과 표준편차는 상대적 순위이며, 해석할 때 이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이학식·임지훈, 2015; 홍두승, 2004; 홍두승 외, 2005).

다음으로 종속변수인 부모의 상속결정 요인은 상속결정 여부, 상속/증여방법, 유산을 남기지 않으려는 이유를 고려하였다. 이때, 상속결정 여부는 유산상속을 할 것임과 하지 않을 것임으로 구분한 홍공숙 외(1995), 유산상속시기와 관련하여 죽은 사후상속, 사전상속, 상속계획없음으로 구분한 김현식 외(2012), 유산상속 의향을 유산상속 가능성으로 본 김용진(2013)에 기초하여 자녀에게 상속/증여를 통해 재산을 남기기 원하는지 여부로 구분하였다. 또 상속/증여방법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누구에게 얼마만큼 줄 것인지를 다룬 김현식 외(2012), 상속/증여를 하지 않는 이유는 자녀보다 자신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자녀보다 사회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하는 이유를 제시한 김현식과 황선재(2013)의 연구에 기초하여 선정하였다.

연구에서 사용된 독립변수인 부모특성, 가구관련 요인, 자녀특성 실태는 <표 3>과 같다.

(표 3) 부모특성, 가구관련 요인 및 자녀특성

	전체(1834)		베이비붐(142)		해방이후(534)		일제강점기(1158)		χ ²	
	Freq.	%	Freq.	%	Freq.	%	Freq.	%		
성별	남	1137	62.0	96	67.6	359	67.2	682	58.9	12.829 **
	여	697	38.0	46	32.4	175	32.8	476	41.1	
학력	초졸이하	980	53.4	24	16.9	218	40.8	738	63.7	185.201 ***
	중졸	325	17.7	30	21.1	136	25.5	159	13.7	
	고졸	369	20.1	66	46.5	134	25.1	169	14.6	
	대졸이상	160	8.7	22	15.5	46	8.6	92	7.9	
배우자유무	유	1133	61.8	106	74.6	377	70.6	650	56.1	43.195 ***
	무	701	38.2	36	25.4	157	29.4	508	43.9	
경제활동	취업	821	44.8	122	85.9	304	56.9	395	34.1	182.367 ***
	비취업	1013	55.2	20	14.1	230	43.1	763	65.9	
전체세대수	1세대	1481	80.8	64	45.1	390	73.0	1027	88.7	183.700 ***
	2세대이상	353	19.2	78	54.9	144	27.0	131	11.3	
거주지역	서울광역시	726	39.6	54	38.0	244	45.7	428	37.0	11.810 **
	도	1108	60.4	88	62.0	290	54.3	730	63.0	
주택점유형태	자가	1565	85.3	116	81.7	465	87.1	984	85.0	2.925
	전월세기타	269	14.7	26	18.3	69	12.9	174	15.0	
가계금융자산유무	유	1148	62.6	115	81.0	335	62.7	698	60.3	23.176 ***
	무	686	37.4	27	19.0	199	37.3	460	39.7	
가계부채유무	유	434	23.7	58	40.8	172	32.2	204	17.6	68.237 ***
	무	1400	76.3	84	59.2	362	67.8	954	82.4	
경제적독립여부	유	948	51.7	107	75.4	329	61.6	512	44.2	78.801 ***
	무	886	48.3	35	24.6	205	38.4	646	55.8	
자녀성별구성	이들	49	34.5	124	23.2	155	13.4	328	17.9	96.133 ***
	딸	20	14.1	56	10.5	53	4.6	129	7.0	
	이들+딸	73	51.4	354	66.3	950	82.0	1377	75.1	
자녀혼인구성	기혼	27	19.0	280	52.4	937	80.9	1244	67.8	621.933 ***
	미혼	72	50.7	40	7.5	14	1.2	126	6.9	
	기혼+미혼	43	30.3	214	40.1	207	17.9	464	25.3	
자녀거주상태	동거	32	22.5	24	4.5	26	2.2	82	4.5	194.416 ***
	별거	76	53.5	397	74.3	1030	88.9	1503	82.0	
	동거+별거	34	23.9	113	21.2	102	8.8	249	13.6	
										F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연령(세)		70.73	8.10	54.72	2.16	64.36	2.67	75.64	5.07	2304.280 ***
교육연수(년)		7.56	4.59	10.87	2.94	8.78	3.72	6.59	4.79	89.940 ***
신체건강상태(점#)		2.90	.947	3.60	.87	3.10	.93	2.72	.91	79.186 ***
가구원수(명)		1.90	.79	2.58	.96	2.10	.80	1.72	.68	112.948 ***
연간가계경상소득(천원/년)		19359.51	17322.65	41233.99	27378.83	25137.36	16991.58	14012.75	12177.75	252.419 ***
연간가계소비지출(천원/년)		13435.18	9321.53	24969.46	12256.96	16257.22	9137.57	10719.44	7314.43	227.356 ***
가계부동산자산액(천원)		150763.70	197833.76	204109.15	223454.58	171651.59	178869.32	134589.96	200920.48	12.155 ***
가계금융자산액(천원)		18038.90	42049.86	32292.32	61531.45	23571.63	50725.65	13739.71	33120.54	19.206 ***
가계부채액(천원)		12725.14	41304.79	25429.58	54573.43	18284.70	50989.66	8603.52	33032.46	17.634 ***
자녀관계만족도(점)		3.71	.73	3.78	.74	3.81	.70	3.66	.73	8.547 ***
총자녀수(명)		3.47	1.47	2.09	.66	2.84	1.11	3.93	1.47	207.664 ***

p<.01, *p<.001

IV. 연구결과

1. 자녀의 부모부양과 부모의 상속결정 실태

1) 자녀의 부모부양 실태

부모의 세대집단별 자녀의 부모부양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돌봄(자녀1인당 부모왕래와 부모연락)과 경제적 자원이전(자녀1인당 사적이전)을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전체 세대의 돌봄 중 자녀1인당 부모왕래는 3.84(3개월에 1-2회 가까이), 자녀1인당 부모연락은 4.87(1개월에 1-2회 가까이)이었다. 이는 70대 노인을 대상으로 정서적 자원이전을 분석한 강유진(2012)의 연구에서 부모방문이 4.46(1개월에 1-2회에서 1주에 1-2회 사이), 부모연락이 5.52(1주에 1-2회에서 1주에 3회 사이)로 나타난 결과와 비교할 때 돌봄 수준이 낮았다. 세대집단별로 보면,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1인당 부모왕래 빈도는 2.78로 6개월에 1-2회 가까이, 해방이후 세대와 일제강점기 세대는 각각 3.82, 3.98로 3개월에 1-2회 가까이 왕래하였다. 또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1인당 부모연락 빈도는 3.48로 6개월에 3회 가까이 연락하였고, 해방이후 세대와 일제강점기 세대는 각각 4.80, 5.07로 1개월에 1-2회 정도 연락하였다. 이처럼 연령이 높은 세대에서 자녀1인당 부모왕래와 부모연락 빈도가 높은 것은 부모의 건강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녀의 경제적 자원이전인 자녀1인당 사적이전

을 분석한 결과, 전체 세대의 자녀1인당 사적이전은 672천원이었고, 세대집단별로 보면 베이비붐 세대는 연간 214.14천원이었으나 해방이후 세대와 일제강점기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의 3배가 넘는 연간 708.08천원, 711.57천원이었다. 이처럼 연령이 높은 세대에서 자녀1인당 사적이전이 많은 것은 부모의 경제활동 축소 및 자산 감소가 자녀의 부모부양이 유도하고, 다른 한편으로 부모의 연령증가는 곧 자녀의 연령증가이므로 자녀의 경제력 향상이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부모의 상속결정 실태

부모의 상속결정 실태를 조사한 결과는 <표 5>와 같이 전체 세대 중 상속결정 의지를 보인 비율은 58.3%이었다. 세대집단별 상속결정 실태를 보면, 베이비붐 세대 중 상속결정 의지를 보인 비율은 49.3%였으나 해방이후 세대와 일제강점기 세대는 각각 59.2%, 59.1%로 나타나 베이비붐 세대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고령의 의존적 노인일수록 상속완료율이 높다고 한 김혜경(2008), 연령이 높을수록 상속 비율이 증가한다는 김현식 외(2012)의 연구결과와 같다.

다음으로 자녀에게 상속결정 의지를 가진 부모가 원하는 상속방법을 보면, 전체 세대의 81.2%가 자녀수균등상속 의지를 보였고, 각 세대집단에서 베이비붐 세대는 84.3%, 해방이후 세대는 84.2%, 일제강점기 세대는 79.5%를 보여 성평등적 사고의

<표 4> 자녀의 부모부양 실태

부모부양 요인	전체(1834)		베이비붐(142)		해방이후(534)		일제강점기(1158)		F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자녀1인당 부모왕래	3.84	1.29	2.78	2.05	3.82	1.33	3.98	1.07	
자녀1인당 부모연락	4.87	1.47	3.48	2.47	4.80	1.53	5.07	1.15	
자녀1인당 사적이전(천원/년)	672.04	1180.34	214.14	539.94	708.08	1677.81	711.57	920.30	11.719 ***

***p<.001

자녀의 왕래빈도/연락빈도 0. 거의 없음 1. 몇 년에 한번 2. 1년에 1-2회 3. 6개월에 1-2회 4. 3개월에 1-2회 5. 1개월에 1-2회 6. 1주일에 1-2회 7. 1주일에 3-4회 8. 1주일에 5-7회

〈표 5〉 부모의 상속결정 실태

상속결정 변수	전체(1834)		베이비붐(142)		해방이후(534)		일제강점기(1158)		χ^2
	Freq.	%	Freq.	%	Freq.	%	Freq.	%	
상속/증여의지 여부 예	1070	58.3	70	49.3	316	59.2	684	59.1	5.185 *
아니오	764	41.7	72	50.7	218	40.8	474	40.9	
	전체(1070)		베이비붐(70)		해방이후(316)		일제강점기(684)		
상속/증여희망방법# 자녀수균등	869	81.2	59	84.3	266	84.2	544	79.5	
동거부양자녀우대	61	5.7	3	4.3	17	5.4	41	6.0	
별거부양자녀우대	33	3.1	1	1.4	4	1.3	28	4.1	
사업계승자녀	1	0.1	0	0.0	1	0.3	0	0.0	
사업불계승자녀	1	0.1	0	0.0	1	0.3	0	0.0	
비부양장남장녀	62	5.8	3	4.3	11	3.5	48	7.0	
1인자녀상속	30	2.8	3	4.3	12	3.8	15	2.2	
기타	13	1.2	1	1.4	4	1.3	8	1.2	
	전체(764)		베이비붐(72)		해방이후(218)		일제강점기(474)		
상속/증여 안하는 생존시모두사용	221	28.9	15	20.8	74	33.9	132	27.8	
이유# 친족상속결정	16	2.1	2	2.8	1	0.5	13	2.7	
기부	4	0.5	0	0.0	1	0.5	3	0.6	
유산여유없음	523	68.5	55	76.4	142	65.1	326	68.8	

*p<.05

상속/증여희망방법과 상속/증여 안하는 이유는 각 cell의 표본수가 5이하므로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확산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음 순위의 상속방법이 동거부양자녀우대 상속과 비부양장남장녀 상속으로 나타난 결과는 낮은 비율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전통적인 효 개념이 상속결정에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 또 부모 중 자녀에게 상속결정 의지가 없는 이유에서는 세대집단 모두 유산을 남길 여유가 없다는 비율이 가장 높아 베이비붐 세대는 76.4%, 해방이후 세대는 65.1%, 일제강점기 세대는 68.8%이었고, 생존시 모두 사용하고 싶다는 이유는 세대집단 각각 20.8%, 33.9%, 27.8%를 보였다. 이처럼 남길 유산이 없어 생존시 모두 사용하겠다는 것은 수명연장에 대비한 노후준비부족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경제상태가 열악할수록 물려줄 재산이 없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김현식 외(2012)의 연구결과와 같다.

2. 자녀의 부모부양이 부모의 상속결정에 미치는 영향

자녀의 부모부양이 부모의 상속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상속결정 의지가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으로 구분하여 세대집단별 자녀의 돌봄과 경제적 자원이전의 차이를 확인하고 부모의 상속결정에 대한 자녀의 부모부양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1) 자녀의 부모부양과 부모의 상속결정 관계
부모의 상속결정 의지가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으로 구분하고 자녀1인당 부모왕래, 자녀1인당 부모연락, 자녀1인당 사적이전의 차이를 세대집단별로 확인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먼저 자녀1인당 부모왕래 빈도를 보면, 상속결

〈표 6〉 자녀의 부모부양과 부모의 상속결정의 관계

자녀의 부모부양	부모의 상속결정 상속/증여 의지 있음(1070)			상속/증여 의지 없음(764)		
	세대집단(N)	Mean	S.D.	세대집단(N)	Mean	S.D.
자녀1인당 부모왕래	베이비붐 (70)	3.01	1.95	베이비붐 (72)	2.56	2.13
	해방이후 (316)	3.90	1.35	해방이후 (218)	3.69	1.33
	일제강점기 (684)	4.05	.99	일제강점기 (474)	3.88	1.18
	전체 (1070)	3.94	1.21	전체 (764)	3.70	1.39
자녀1인당 부모연락	베이비붐 (70)	3.75	2.32	베이비붐 (72)	3.22	2.60
	해방이후 (316)	4.94	1.52	해방이후 (218)	4.60	1.53
	일제강점기 (684)	5.16	1.04	일제강점기 (474)	4.93	1.27
	전체 (1070)	5.00	1.36	전체 (764)	4.68	1.59
자녀1인당 사적이전(천원/년)	베이비붐 (70)	143.81	450.61	베이비붐 (72)	282.52	609.93
	해방이후 (316)	584.58	1075.33	해방이후 (218)	887.10	2276.28
	일제강점기 (684)	712.00	968.30	일제강점기 (474)	710.94	847.27
	전체 (1070)	637.20	986.52	전체 (764)	720.83	1406.89
	F	11.387 ***		F	5.082 ***	

***p<.001

자녀의 왕래빈도/연락빈도 0. 거의 없음 1 몇 년에 한번 2. 1년에 1-2회 3. 6개월에 1-2회 4. 3개월에 1-2회 5. 1개월에 1-2회 6. 1주일에 1-2회 7. 1주일에 3-4회 8. 1주일에 5-7회

정 의지가 있는 집단 중 베이비붐 세대는 3.01을 보여 6개월에 1-2회 정도 왕래하였다. 그러나 해방 이후 세대와 일제강점기 세대는 각각 3.90, 4.05로 3개월에 1-2회 정도 왕래하여 베이비붐 세대보다 부모왕래 빈도가 높았고 세대집단별 자녀1인당 부모왕래 빈도도 차이가 있었다. 또 부모 중 상속결정 의지가 없는 집단의 베이비붐 세대는 2.56으로 9개월에 1-2회 정도 부모왕래를 하였으나 해방이후 세대와 일제강점기 세대는 각각 3.69, 3.88를 보여 3개월에 1-2회 가까이 왕래를 하여, 연령이 높은 세대로 가면서 부모왕래가 증가하였고 세대집단별 차이가 있었다. 자녀1인당 부모연락 빈도를 보면, 부모의 상속결정 의지가 있는 집단 중 베이비붐 세대는 3.75를 보여 3개월에 1-2회 가까이 자녀가 부모에게 연락하였으나 해방이후 세대와 일제강점기 세대는 각각 4.94, 5.16을 보여 1개월에 1-2회 정도 연락하여, 베이비붐 세대보다 연락빈도

가 더 많았다. 또 세대집단별 자녀1인당 부모연락 빈도도 차이를 보였다. 상속결정 의지가 없는 집단의 베이비붐 세대는 3.22를 보여 6개월에 1-2회 이상 연락하였으나 해방이후 세대와 일제강점기 세대는 각각 3.69, 4.88를 보여 2개월에 1-2회 정도 부모와 연락하여 베이비붐 세대보다 연락빈도가 더 많았고, 세대집단별 자녀1인당 부모연락 빈도도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상속결정 의지가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에서 연령이 높은 세대로 가면서 자녀1인당 부모왕래와 부모연락 빈도가 증가한 것은, 부모연령이 증가하면서 가족부양을 기대하는 부모에 대해 자녀가 도구적 부양과 정서적 부양을 수행하는 것(조추용, 2004)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부모 중 상속결정 의지가 있는 집단과 상속결정 의지가 없는 집단의 자녀1인당 부모왕래와 부모연락 빈도를 비교할 때 상속결정 의지가 없는 집단보다 있는 집단

의 빈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는, 상속결정 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녀의 돌봄이 증가하는 것인지, 자녀의 돌봄이 증가하여 상속결정 의지가 생기는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자녀의 경제적 자원이전을 파악하기 위해, 상속결정 의지가 있는 집단의 자녀1인당 사적이전을 보면, 베이비붐 세대는 연평균 143.81천원인데 비해 해방이후 세대와 일제강점기 세대는 584.58천원, 712.00천원으로 연령이 높은 세대로 가면서 자녀1인당 사적이전이 증가하였고, 세대집단별 자녀1인당 사적이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특히 해방이후 세대와 일제강점기 세대의 자녀1인당 사적이전은 베이비붐 세대의 4.1배, 5.0배로 나타나 자녀1인당 사적이전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또 부모 중 상속결정 의지가 없는 집단의 자녀1인당 사적이전은 베이비붐 세대가 가장 적어 연평균 282.52천원이었고 해방이후 세대와 일제강점기 세대는 각각 887.10천원, 710.94천원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3.1배, 2.5배를 보였다.

이처럼 상속결정 의지가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 모두 연령이 높은 세대로 갈수록 자녀1인당 사적이전이 증가한 결과는 축소되고 있는 부모의 경제활동과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자녀의 경제적 부양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상속결정 의지가 없는 집단의 베이비붐 세대와 해방이후 세대

의 자녀1인당 사적이전이 상속결정 의지가 있는 집단보다 많은 것은, 부모의 열악한 경제상태 때문에 상속결정의 여력이 부족하며 자녀의 경제적 지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상속결정 의지가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 모두 일제강점기 세대의 자녀1인당 사적이전 규모가 비슷한 것은, 상속결정 의지와 관계없이 부모의 생활유지를 위해 자녀가 지원해야 하는 경제적 부양기준으로 참고할 수 있다.

2) 자녀의 부모부양이 부모의 상속결정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상속결정에 대한 자녀의 부모부양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부모부양은 돌봄의 자녀1인당 부모왕래와 부모연락, 경제적 자원이전의 자녀1인당 사적이전으로 보였고, 이러한 변수들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피어슨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녀1인당 부모왕래와 자녀1인당 부모연락의 상관관계수가 높아($r=.781$), 자녀1인당 부모연락과 자녀1인당 사적이전을 연구모형에 포함하였다.

먼저 전체 세대의 자녀1인당 부모연락과 자녀1인당 사적이전은 부모의 상속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 자녀1인당 부모연락 빈도가

<표 7> 부모의 상속결정에 대한 자녀의 부모부양의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부모의 상속결정	전체 (1834)		베이비붐 (142)		해방이후 (534)		일제강점기 (1158)	
	B	S.E,	B	S.E,	B	S.E,	B	S.E,
자녀1인당 부모연락	.161	.033 ***	.116	.071	.154	.058 **	.178	.053 **
자녀1인당 사적이전	.000	.000 *	-.001	.000	.000	.000 *	.000	.000
상수항	-.382	.165 *	-.299	.295	-.274	.291	-.509	.271
-2 Log 우도	2464.682		191.663		710.811		1555.678	
Cox와 Snell의 R-제곱	.014		.036		.021		.010	
Nagelkerke R-제곱)	.019		.048		.028		.013	
Hosmer와 Lemeshow(χ^2)	7.206		16.743		6.535		12.677	

* $p<.05$, ** $p<.01$, *** $p<.001$

높을수록, 자녀1인당 사적이전이 많을수록 부모의 상속결정 가능성이 높았으며, 강유진(2012)의 연구에서 세대간 기능적 차원인 자녀와의 연락빈도와 경제적 자원 변수가 상속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결과와 같다.

세대집단별로 보면, 베이비붐 세대에서 자녀1인당 부모연락과 사적이전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해방이후 세대에서는 자녀1인당 부모연락과 사적이전이 모두 유의한 변수로 나타나 자녀1인당 부모연락이 많을수록, 자녀1인당 사적이전이 많을수록 부모의 상속결정 의지가 높았다. 일제강점기 세대에서는 자녀1인당 부모연락만 유의하여 자녀1인당 부모연락 빈도가 높을수록 부모의 상속결정 의지가 높았다. 이처럼 베이비붐 세대에서 부모연락과 사적이전이 유의하지 않은 결과는 베이비붐 세대의 가구주 연령이 54.72세이고 경제활동 비율이 74.6%여서 자녀의 돌봄과 경제적 자원이전, 상속에 대해 현실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해방이후 세대는 자녀의 돌봄과 경제적 자원이전이 부모의 상속결정에 정적 영향을 주었는데, 그것은 이타주의와 교환에 근거를 둔 상속동기가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윤정·고선강, 2011). 또 일제강점기 세대는 자녀의 돌봄인 자녀1인당 부모연락만이 부모의 상속결정에 정적 영향을 미쳤는데, 그것은 부모의 연령이 높아 건강이나 생활유지에 대한 잔존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자녀의 연락빈도가 증가하고 이를 통한 존중과 정서적 교감이 부모의 상속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석재은, 2014).

3. 부모의 상속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부모의 상속결정에 대한 부모특성, 가구관련 요인, 자녀특성 및 자녀의 부모부양 요인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인 부모의 상속결정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상속 및 증여 의지여부로 보았다. 독립변수들은 피어슨의 상관계수¹⁾를 분석하여 다중공선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연구모형에 포함된 부모특성은 세대집단(해방이후 세대, 일제강점기 세대), 성별, 학력(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학 이상), 배우자유무(유/무), 경제활동(취업/비취업), 신체건강상태, 가구관련 요인은 거주지역(서울·광역시/도), 주택점유형태(자가/전월세 및 기타), 가계소비지출, 가계금융자산유무(유/무), 가계부채유무(유/무), 경제적 독립여부(유/무), 자녀특성은 자녀관계만족도, 총자녀수, 자녀성별구성(아들/딸/아들과 딸), 자녀혼인구성(기혼자녀/미혼자녀/기혼자녀와 미혼자녀), 자녀거주상태(동거자녀/별거자녀/동거자녀와 별거자녀), 자녀의 부모부양 요인은 자녀1인당 부모연락과 자녀1인당 사적이전이였다.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8>과 같다.

1) 전체 세대의 상속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전체 세대에서 부모의 상속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는 부모특성의 세대집단(해방이후 세대, 일제강점기 세대), 배우자유무(유), 가구관련 요인의 주택점유형태(자가), 가계소비지출, 가계금융자산유무(유), 경제적 독립여부(유), 자녀특성의 자녀관계만족도, 자녀혼인구성(기혼자녀만 있음),

1) 독립변수로 사용된 부모특성은 연령, 성별, 학력, 배우자유무, 경제활동, 신체건강상태를, 가구관련 요인은 전체 세대수, 거주지역, 주택점유형태, 가계경상소득, 가계소비지출, 가계금융자산액, 가계부채액, 경제적 독립여부였다. 자녀 특성은 자녀관계만족도, 총자녀수, 자녀성별구성, 자녀혼인구성, 자녀거주상태를, 자녀의 부모부양 요인은 자녀1인당 부모왕래, 자녀1인당 부모연락, 자녀1인당 사적이전 변수를 포함하였다. 이러한 변수 중 전체 세대수, 가계경상소득, 가계소비지출, 총자녀수 등의 변수들은 피어슨 상관계수가 0.4 이상을 보여 전체세대수, 가계경상소득을 제외한 총자녀수와 가계소비지출 변수를 연구모형에 포함하였고, 연속변수인 가계금융자산액, 가계부채액은 가계금융자산유무와 가계부채유무로 대체하였다. 또한 부모부양 요인의 자녀1인당 부모왕래와 자녀1인당 부모연락의 피어슨 상관계수는 0.7이상을 보여 자녀1인당 부모연락을 연구모형에 포함하였다.

〈표 8〉 부모의 상속결정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부모의 상속결정	전체 (1834)		베이비붐 (142)		해방이후 (534)		일제강점기 (1158)	
	B	S.E.	B	S.E.	B	S.E.	B	S.E.
세대집단(베이비붐 세대)								
해방이후 세대	-.513	.236 *						
일제강점기 세대	-.707	.256 **						
성별(남)	-.128	.189	-.299	.613	-.410	.347	.050	.255
학력(초등학교이하)								
중학교	.194	.150	.542	.656	.208	.258	.160	.204
고등학교	.154	.158	-.069	.649	.171	.283	.265	.211
대학이상	-.097	.223	.379	.835	-.116	.424	-.212	.299
배우자유무(유)	.395	.191 *	.397	.652	.999	.357 **	.138	.252
경제활동(취업)	.118	.128	.087	.728	.183	.228	.074	.165
신체건강상태	-.040	.061	.040	.277	-.105	.111	-.022	.079
거주지역(서울·광역시)	.141	.113	.213	.475	.151	.208	.107	.149
주택점유형태(자가)	-1.268	.153 ***	-.155	.600	-.984	.299 **	-1.601	.202 ***
ln연간가계소비지출	.503	.116 ***	.792	.519	.542	.224 *	.400	.147 **
가계금융자산유무(유)	-.310	.110 **	-1.907	.660 **	-.082	.208	-.323	.138 *
가계부채유무(유)	-.066	.127	-.337	.503	.068	.208	-.130	.178
경제적독립여부(유)	-.388	.126 **	-.964	.560	-.452	.238	-.369	.161 *
자녀관계만족도	.458	.074 ***	.458	.318	.446	.144 **	.486	.095 ***
총자녀수	-.057	.045	-.202	.378	-.195	.102	-.016	.053
자녀성별구성(아들+딸)								
아들	.232	.149	.273	.506	.446	.250	.039	.216
딸	.177	.213	1.282	.645 *	.054	.333	-.024	.344
자녀혼인구성(기혼+미혼)								
기혼자녀	-.284	.133 *	-.285	.634	-.180	.221	-.262	.183
미혼자녀	-.271	.258	-.409	.534	-.467	.417	.585	.693
자녀거주상태(동거+별거)								
동거자녀	.271	.303	.308	.705	.067	.537	.676	.545
별거자녀	.032	.163	-.525	.650	-.158	.254	.253	.247
자녀1인당 부모연락	.124	.044 **	.031	.132	.168	.081 *	.089	.066
자녀1인당 사적이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상수항	-5.822	1.381 ***	-10.432	6.233	-6.415	2.642 *	-6.301	1.887 **
-2 Log 우도	2240.523		157.660		653.420		1381.477	
Cox와 Snell의 R-제곱	.128		.241		.121		.148	
Nagelkerke R-제곱	.172		.321		.163		.200	
Hosmer와 Lemeshow(χ^2)	5.266		6.767		8.543		9.230	

*p < 0.05, **p < 0.01, ***p < 0.001

() : 기준변수

부모부양 요인의 자녀1인당 부모연락이었고, 모형 적합도 χ^2 값은 5.266이었다. 먼저 부모의 상속결정 가능성은 베이비붐 세대에 비해 해방이후 세대와 일제강점기 세대일 때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 가계가 자녀교육비나 결혼비용, 주거마련비용, 노후자금에 대한 장기적 전망을 고려하여 상속결정 의지가 있지만(Kao, 1996; 배희선, 2008에서 재인용), 해방이후 세대와 일제강점기 세대는 기대수명에 대비한 건강유지 및 노후자금 마련에 직면해 있어 상속결정 의지가 줄어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배우자와 사별했을 때보다 배우자가 있을 때 부모의 상속결정 가능성이 높은 것은, 무배우가족(이혼, 별거, 사별, 독신)보다 부부가족이 자녀에게 이타적이어서 유산상속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 Kotlikoff & Summers(1981)의 연구결과가 뒷받침해 준다(홍공숙 외, 1995에서 재인용).

한편 가구관련 요인에서, 현재 거주주택이 전월세 및 기타일 때보다 자가일 때 부모의 상속결정 가능성이 낮았다. 그것은 자산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이 노후자금 마련과 주택연금 활용에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어 상속결정을 보류하는 것(박민지 외, 2014)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부모세대의 주택점유가 자녀세대에게 이전되는 효과가 있다고 한 김주영과 유승동(2016)의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또 가계소비지출이 많을수록 부모의 상속결정 가능성이 높은 것은 해방이후 세대나 일제강점기 세대보다 베이비붐 세대는 부모연령이 낮고 기대수명이 길며 경제활동으로 소득 및 소비지출 수준이 높아 자녀에 대한 상속결정을 낙관적으로 관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상속예정여부에 따라 월평균 생활비의 차이를 보인 허경옥과 유수현(2014)의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가계금융자산이 없을 때보다 있을 때 상속결정 가능성이 낮은 결과는 기대수명의 장기화에 대한 대비책으로 노후자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한 상속결정을 고려하지 못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자산보유가 많을수록

상속가계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 배희선(2008)의 결과와는 상반된다. 경제적 독립여부를 보면, 부모가 경제적 독립성이 없을 때보다 있을 때 상속결정 의지가 낮았는데, 이는 부모의 경제적 자립도가 부모의 상속결정에 영향을 준다고 한 정지영과 양세정(2013)의 연구결과와 같다.

자녀특성에서 자녀관계만족도는 부모의 상속결정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부모자녀관계가 좋을 때 자녀와 왕래빈도가 높고 부모에게 순응하기 때문에 유산상속 가능성이 크다고 한 김용진(2013)의 연구결과와 같다. 한편 자녀혼인구성에서 기혼자녀와 미혼자녀를 모두 둔 경우보다 기혼자녀만 둔 경우 상속결정 가능성이 낮았는데, 이는 기혼자녀만 두었을 때 자녀연령이 높고 경제적 자립이 가능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어 상속결정 가능성이 낮지만 기혼자녀와 미혼자녀를 둔 부모는 미혼자녀의 장래를 걱정하여 상속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자녀의 부모부양 요인에서, 자녀1인당 부모연락 빈도가 높을수록 상속결정 가능성이 높은 결과는 자녀의 부모연락빈도가 친밀감과 유대감을 증대시켜 자녀상속에 대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하는 것(김현식·황선재, 2013)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서적 지원이 전통적 상속보다 비상속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 강유진(2012)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2) 세대집단별 부모의 상속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베이비붐 세대의 상속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는 가구관련 요인의 가계금융자산유무, 자녀특성의 자녀성별구성(딸만 있음)이었고, 모형 적합도 χ^2 값은 6.767이었다. 즉, 베이비붐 세대가 가계금융자산이 없을 때보다 보유하고 있을 때 상속결정 가능성이 낮았다. 이는 기대수명이 긴 베이비붐 세대가 자녀의 부모부양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상속결정 가능

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유동성이 높은 유가증권자산과 예적금 및 적립식/거치식 펀드 평가액이 많을수록 유산상속 확률이 높지만 개인연금 및 저축성 보험이 많을수록 유산상속 확률이 낮다고 한 김용진(2013)의 연구결과와는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또 자녀특성에서 베이비붐 세대가 아들과 딸을 모두 두었을 때보다 딸만 두었을 때 부모의 상속결정 의지가 높았는데, 이는 여성노인이 딸을 많이 두었을 때 사회 환원보다 자녀에게 유산상속을 한다고 한 김현식과 황선재(2013)의 연구와 같으며, 딸만 둔 부모가 딸의 미래를 걱정하는 이타주의에 기반을 둔 상속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해방이후 세대의 상속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는 부모특성의 배우자유무, 가구관련 요인의 주택점유형태, 가계소비지출, 자녀특성의 자녀관계만족도, 자녀의 부모부양 요인의 자녀1인당 부모연락이었고, 모형적합도 χ^2 값은 8.543이었다. 배우자와 사별했을 때보다 배우자가 있을 때 부모의 상속결정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혼인상태가 기타상태보다 사후상속 예정비율이 높다고 한 김현식 외(2012)의 연구와 같은 맥락이며, 무배우자보다 부부일 때 가족가치관을 중히 여겨 자녀에게 부를 상속하는 이타적 상속과 효과 교환에 기반을 둔 전략적 상속을 경험한 세대의 사회적 성장배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 현재 거주주택이 전월세 및 기타일 때보다 자가일 때, 부모의 상속결정 가능성이 낮은 것은, 보유자산인 주택을 유지하여 부모의 기대수명 장기화에 대한 노후자금을 충당하려 하기 때문에 상속결정 의지가 감소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한편 가계소비지출이 많을수록 부모의 상속결정 의지가 높게 나타난 결과는, 부모가 상속을 예정하지 않을 때보다 예정하고 있을 때 월평균 생활비가 높다는 허경옥과 유수현(2014)의 연구결과와 관련이 있다. 해방이후 세대의 자녀특성에서, 자녀관계만족도가 높을수록 부모의 상속결정 가능성이 높은 것은 부모자녀관계만족도를 유지하는 호혜적 정서감이나 유대감이 상

속결정 의지를 유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부모자녀관계가 좋을 때 유산상속 가능성이 크다고 한 김용진(2013)의 연구결과와 같다. 자녀의 부모부양 요인에서 자녀1인당 부모연락 빈도가 높을수록 상속결정 가능성이 높은 결과는, 부모를 걱정하는 자녀의 정서적 자원이전에 대한 부모의 보상으로써 자녀에게 상속결정 의지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녀서비스(자녀도움)가 유산상속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 김용진(2013)의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일제강점기 세대에서 부모의 상속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구관련 요인의 주택점유형태, 가계소비지출, 가계금융자산유무, 경제적 독립여부, 자녀특성의 자녀관계만족도였고, 모형적합도 χ^2 값은 8.543이었다. 주택점유형태에서, 현재 거주주택이 전월세 및 기타일 때보다 자가일 때 부모의 상속결정 가능성이 낮았다. 그것은 일제강점기 세대가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연령이어서 경제상태가 열악하고 잔존 노후기간도 불확실하여 최종대안으로써 주택연금제도를 활용하고자 한다는 박민지 외(2014)의 연구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또 가계소비지출이 많을수록 부모의 상속결정 가능성이 높은 결과는 월평균 생활비가 높을 때 부모의 상속예정 가능성이 높다고 한 허경옥과 유수현(2014)의 연구와 같으며, 일제강점기 세대가 많은 가계소비지출을 감당할 수 있다는 점은 소득수준이 높고 경제상태도 좋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어 상속결정에 대한 부담감도 낮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가계금융자산은 없을 때보다 있을 때 상속결정의지가 낮았다. 이러한 부적관계는 개인연금 및 저축성 보험이 많을수록 유산상속 확률이 낮다고 한 김용진(2013)의 연구결과와 같으며, 일제강점기 세대는 잔존수명을 위한 노후자금 확보를 위해 상속결정보다 금융자산 보유를 더 우선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경제적 독립여부도, 경제적 독립성이 없을 때보다 있을 때 상속결정 의지가 낮았다. 부모의 경제적 독립상태

는 자신의 노후생활을 책임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일제강점기 세대는 이를 위해 자녀에 대한 상속결정 의지를 유보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부모의 경제적 자립도가 부모의 상속결정에 영향을 준다고 한 정지영과 양세정(2013)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한편 자녀 특성에서, 자녀관계만족도가 높을수록 부모의 상속결정 의지가 높은 결과는 부모와 자녀관계가 좋으면 교환에 기반을 둔 상호호혜성에 의해 세대간 이전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Sabatelli & Shehan, 1993; 고선강, 2013에서 재인용).

이상의 결과를 통해 세대집단별 부모의 상속결정에 대한 변수들을 비교하면, 베이비붐 세대와 일제강점기 세대는 부모특성이 유의하지 않은 변수였지만, 해방이후 세대는 배우자유무만이 유의한 변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해방이후 세대는 무배우자 비율이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부부가 생존해 있는 해방이후 세대는 부부의 현재와 미래 경제상태를 고려하는 동시에 자녀에 대한 상속결정도 고려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세대집단별 가구관련 요인을 보면, 베이비붐 세대는 가계금융자산유무만이 유의하였으나 해방이후 세대는 주택점유형태, 가계소비지출, 일제강점기 세대는 주택점유형태, 가계소비지출, 가계금융자산유무, 경제적 독립여부 등이 유의하였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노후자금이 축소되기 때문에 현재 경제요인이 부모의 상속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녀특성 중 베이비붐 세대에 유의한 변수는 자녀성별구성(딸만 있음)이었으나 해방이후 세대와 일제강점기 세대는 자녀관계만족도였다. 이러한 차이는 베이비붐 세대가 아들과 딸을 두었을 때보다 딸만 있을 때 딸의 사회적 취약성을 걱정하여 상속결정 의지가 강해지며, 해방이후 세대나 일제강점기 세대는 고령화에 따른 정서적, 신체적, 경제적 취약성 때문에 자녀관계만족도에 의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녀의 부모부양 요인에서, 베이비붐 세대와 일제강점기 세대의 자녀1인당 부모연락과 자녀1인

당 사적이전은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해방이후 세대에서는 자녀1인당 부모연락만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부모부양 개념이 경제적 자원이전보다는 효와 가족주의를 중요시하는 정서적 자원이전과 도구적 자원이전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상속결정에서 돌봄의 중요성을 심층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임을 보여준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대집단별 부모의 상속결정과 자녀의 부모부양 실태를 파악하였다.

전체 세대 중 상속결정 의지를 보인 비율은 58.3%였고, 베이비붐 세대 49.3%, 해방이후 세대 59.2%, 일제강점기 세대 59.1%를 보여 연령이 증가하면서 상속결정 의지가 증가하였다. 상속결정 의지를 가진 부모가 원하는 상속방법은 전체 세대 및 세대집단의 80% 정도가 자녀수균등상속을 원해 성평등적 사고가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상속결정 의지가 없는 부모도 40% 이상이었는데, 그 이유로는 세대집단 모두 유산을 남길 여유가 없고 또 생존시 모두 사용하고 싶다고 하였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 중 남길 유산이 없다는 비율은 해방이후 세대와 일제강점기 세대보다 높았다. 한편 자녀의 부모부양을 돌봄과 경제적 자원이전으로 볼 때, 부모왕래보다 부모연락 빈도가 높았고 연령이 높은 세대로 가면서 부모왕래와 부모연락 빈도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연락이 부모왕래보다 용이한 점과 부모연령이 높을수록 건강이 우려되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 연령이 높은 세대로 갈수록 자녀1인당 사적이전이 증가한 것은 경제활동과 자산이 감소한 부모를 위해 자녀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부모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이 증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상속결과와 자녀의 부모부양 실태를 종합하면, 세대집단 중 베이비붐 세대의 상속결정 의지가 가장 낮았고, 연령이 높은 세대로 가면서 부모부양은 증가하였지만 상속결정 의지는 감소하였으며, 상속결정 의지가 없는 집단은 그 이유를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부모부양이 부모의 상속결정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상속결정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요인의 탐색, 상속결정 의지가 없는 집단에 대한 경제적 요인의 영향 분석, 기대수명이 길 것으로 예상되는 베이비붐 세대의 종단적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둘째, 부모 중 상속결정 의지가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의 부모부양 실태를 세대집단별로 조사하고, 자녀의 부모부양이 부모의 상속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부모의 상속결정에서, 의지가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은 모두 부모연령이 높을수록 자녀1인당 부모왕래와 부모연락 빈도, 사적이전이 증가하였다. 특히 해방이후 세대와 일제강점기 세대의 부모왕래와 부모연락은 큰 차이가 없었지만 베이비붐 세대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한편 상속결정 의지가 있는 집단의 자녀1인당 부모왕래와 부모연락 빈도는 상속결정 의지가 없는 집단보다 높았지만 자녀1인당 사적이전은 상속결정 의지가 없는 집단이 더 높았다. 이처럼 부모의 상속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1인당 부모왕래와 부모연락은 연령이 높은 세대로 가면서 증가하는 현상은 자녀의 부모부양에서 돌봄의 비중이 커지는 변화를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부모의 상속결정 의지가 없는 이유가 열악한 경제상태인 것과 관련지어 볼 때, 자녀의 사적이전에 대한 부담감이 더욱 가중될 수 있으며, 상속결정 의지가 없는 집단 중에서 해방이후세대의 사적이전이 가장 높게 나타난 점은 해방이후 세대의 사적이전 확보뿐 아니라 공적이전의 개입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부모의 상속결정에 대한 자녀의 부모부양

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녀1인당 부모연락과 사적이전은 전체 세대의 상속결정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세대집단별로 보면, 베이비붐 세대에서 자녀의 부모연락과 사적이전은 부모의 상속결정에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해방이후 세대는 자녀1인당 부모연락과 사적이전이 유의한 정적 영향을 보였는데, 이는 부모의 상속동기가 가족주의와 효에 근간을 둔 교환으로 짐작할 수 있으며, 해방이후 세대가 인식하는 부모부양의 정서적 자원 이전, 도구적 자원이전, 경제적 자원이전을 설명하는 변수의 심층적 모색과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세대에서는 자녀1인당 부모연락만이 유의한 정적 영향을 보였는데, 이는 고령화되면서 무배우자 비율이 증가하고 노후자금도 감소되어 경제적 자원이전의 영향이 돌봄의 영향보다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세대집단별 부모의 상속결정에 대한 부모부양 요인의 차이는 고령화세대에 대비하는 각 세대별 부양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이에 기초하여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셋째, 부모의 상속결정에 대한 부모특성, 가구관련 요인, 자녀특성 및 자녀의 부모부양 요인의 영향을 전체 세대와 세대집단별로 분석하였다.

전체 세대에서 부모의 상속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수는 부모특성의 세대집단(해방이후 세대, 일제강점기 세대), 배우자유무(유), 가구관련 요인의 주택점유형태(자가), 가계소비지출, 가계금융자산유무(유), 경제적 독립여부(유), 자녀특성의 자녀관계만족도, 자녀혼인구성(기혼자녀만 있음), 부모부양 요인의 자녀1인당 부모연락이었다. 세대집단별로 보면, 베이비붐 세대에서는 가구관련 요인의 가계금융자산유무, 자녀특성의 자녀성별구성(딸만 있음), 해방이후 세대는 부모특성의 배우자유무, 가구관련 요인의 주택점유형태, 가계소비지출, 자녀특성의 자녀관계만족도, 자녀의 부모부양 요인의 자녀1인당 부모연락, 일제강점기 세대는 가구관련

요인의 주택점유형태, 가계소비지출, 가계금융자산 유무, 경제적 독립여부, 자녀특성의 자녀관계만족도가 유의한 변수였다.

세대집단별로 유의한 변수들을 비교하면, 베이비붐 세대와 일제강점기 세대는 부모특성이 유의하지 않았으나 해방이후 세대는 배우자유무만이 유의하였다. 가구관련 요인에서, 베이비붐 세대는 가계금융자산유무만 유의하였으나 해방이후 세대는 주택점유형태, 가계소비지출, 일제강점기 세대는 주택점유형태, 가계소비지출, 가계금융자산유무, 경제적 독립여부가 유의하였고, 자녀특성 중 베이비붐 세대는 자녀성별구성(딸만 있음)만이 유의한데 반해, 해방이후 세대와 일제강점기 세대는 자녀관계만족도만이 유의한 변수였다. 자녀의 부모부양 요인에서 베이비붐 세대와 일제강점기 세대의 자녀1인당 부모연락과 사적이전은 유의하지 않았지만 해방이후 세대에서는 자녀1인당 부모연락만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상속결정 요인으로써, 배우자 존재, 노후자금 및 경제적 독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택점유형태, 자녀성별구성과 자녀관계만족도, 정서적 자원이전 등이 세대집단별 중요한 변수임을 보여준다. 특히 부모의 상속결정 요인을 분석함에 있어서, 자녀의 부모부양 요인만을 포함한 연구모형과 부모특성, 가구관련 요인, 자녀특성 및 자녀의 부모부양 요인을 모두 포함한 연구모형을 비교하였을 때, 세대집단별 부모부양 요인의 영향이 사라지는 것은, 각 세대에서 나타나는 배우자유무, 주택점유형태, 자녀성별구성 및 자녀관계만족도 등의 변수를 고려한 연구모형의 개발과 확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부모의 상속결정에 대한 자녀의 부모부양의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부모의 연령과 사회적 배경을 중심으로 베이비붐 세대, 해방이후 세대, 일제강점기 세대로 나누어 부모특성, 가구관련 요인, 자녀특성, 자녀의 부모부양 요인의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

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고 있다. 첫째, 세대집단별 표본수의 문제이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표본수가 해방이후 세대와 일제강점기 세대보다 현저히 적은 문제는 근본적으로 자료가 갖는 한계이지만, 해방이후 세대 및 일제강점기 세대와의 비교에서 진단과 해석이 자유롭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부모특성, 자녀특성, 부모부양 요인의 변수들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자녀특성은 이타주의와 교환의 상속동기를 확인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나 학력 및 직업 등과 같은 변수를 연구모형에 포함하지 못하였고, 부모의 상속결정에 중요한 변수인 부모 자신의 상속경험도 포함하지 않아 상속결정의 주체와 대상의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 뿐만 아니라 자녀의 부모왕래와 부모연락을 측정하는 척도가 자료가 갖는 제한성 때문에 결과와 해석의 활용범위를 축소시킨다는 점이다. 나아가 중요한 점은 상속결정이 장기적인 관찰과 분석을 요하는 것임에도 횡단자료 분석에서 오는 한계를 지적할 수 있으며, 정교한 분석을 위해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시차에 의한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강석기(2016). 노후를 대비한 상속과 증여설계. 행복한 부자연구, 5(1), 27-43, 행복한 부자학회.
- 2) 강성호(2013). 연령통합의 관점에서 경제적 자원의 세대간 이전 -세대간 형평성 관점에서 본 공적연금 개선 방향-. 2차 고령사회포럼, 37-5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령화연구센터.
- 3) 강소량·최은영(2016). 베이비붐 세대와 이전 및 이후 세대간 비교분석: 가계자산, 소득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32(2), 1-30, 한국사회보장학회.
- 4) 강유진(2012). 단독가구노인의 재산상속의식과 관련요인: 개인특성과 세대관계특성을 중심으로

- 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3(2), 145-162,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 5) 고선강(2005). 미국 성인자녀의 노부모에 대한 자원이전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1), 187-195. 한국가정관리학회.
 - 6) 고선강(2013). 중년기 가정의 자산과 3세대 간 경제자원 이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4), 131-144, 한국가정관리학회.
 - 7) 구분천(2015). 상속과 유산세를 고려한 가계의 최적 투자 선택. 아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8) 김상용 · 김주수(2010). 주식민법 친족(3). 서울: 한국사법행정학회.
 - 9) 김순미 · 박미려(2008). 중고령자가구의 경제적 자원 교류유형 및 교류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5), 1-14. 한국가정관리학회.
 - 10) 김영순(2013). 기혼 자녀를 둔 부모의 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 -자원이전과 노후준비를 매개변인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11) 김용진(2013). 유산상속 의향에 관한 결정요인 분석. 주택연구, 21(3), 79-99, 한국주택학회.
 - 12) 김은정(2013). 노후 자산 처분 및 상속을 둘러싼 세대 갈등.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5, 165-175, 한국가정관리학회.
 - 13) 김주수 · 김상용(2013). 친족상속법. 서울: 법문사.
 - 14) 김주영 · 유승동(2016). 주택점유의 세대간 이전성. 감정평가학 논집, 15(1), 1-10, 한국감정평가학회.
 - 15) 김현식 · 황선재(2013). 자녀동거가 유산상속 선호형대에 미치는 영향: 노인의 성별 효과에 관한 종단적 분석. 보건사회연구, 33(4), 72-104, 보건사회연구원.
 - 16) 김현식 · 황선재 · 김윤희(2012). 저출산 · 고령화에 따른 유산상속 동기변화 전망과 정책과제. 연구보고서 2012-47-11.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7) 김혜경(2008). 노인의 유산상속과 사회적 지원. 한국노년학, 28(2), 309-323, 한국노년학회.
 - 18) 문영소 · 김양희(1999). 한국가족의 재산상속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2), 157-171, 한국가정관리학회.
 - 19) 박동섭(2013). 친족상속법. 서울: 박영사.
 - 20) 박민지 · 왕동 · 정미화 · 이희숙(2014). 대학생의 노부모부양 및 재산상속에 대한 태도. 생활과학연구논총, 18(1), 185-197. 충북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 21) 배희선(2008). 중노년기 가계의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의 이전시기와 이전여부: 증여와 상속을 중심으로. Financial Planning Review, 1(1), 47-79, 한국FP학회.
 - 22) 석재은(2014).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개념 정립과 향상 방안: 현행 전략의 한계와 ‘좋은 돌봄’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 한국사회복지학, 66(1), 221-249, 한국사회복지학회.
 - 23) 신중협(2016). Are Poor People More Sensitive to Bequest Motives in Building Portfolios? 시장경제연구, 45(1), 1-31, 서강대학교 시장경제연구소.
 - 24) 신화용 · 조병은 · Walker, A. J.(1997).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본 노부모부양과 재산상속의식: 한국과 미국의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1-12, 한국가정관리학회.
 - 25) 오건호(2011). 오건호의 복지富동 -장수가 행복인 사회, 국민연금 개혁으로-, 한겨레21. <http://h21.hani.co.kr/arti/COLUMN/143/30312.html>.
 - 26) 오윤희(2016). 노인가구의 경제활동과 이전소득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 -노인가구유형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27) 이경희(2014). 자(子)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의 법적 근거. 법학연구, 24(1), 201-230, 연세

- 대학교 법학연구원.
- 28) 이기영(2012).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세대간 소득이전. 재정학연구, 5(1), 135-162, 한국재정학회.
 - 29) 이윤정·고선강(2011). 어머니와 성인 자녀간 자원이전: 경제적 자원과 돌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6), 137-151, 한국가정관리학회.
 - 30) 이은희·김경자·이성림·유현정·차경옥·이영애·이준영(2015). 세대별 가계경제구조 비교분석. 소비자정책교육연구, 22(2), 197-227. 소비자정책교육학회.
 - 31) 이정읍·김명자(2001). 중노년기 기혼남녀의 재산상속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4), 151-165, 한국가정관리학회.
 - 32) 이학식·임지훈(2015). SPSS 22 매뉴얼. 서울: 집현재.
 - 33) 정동호(2012). 경인지역 대학생의 재산상속에 관한 의식성향 -상속법제의 현실적합성 검증을 위한 서론-. 가족법연구, 26(3), 439-464, 한국가족법학회.
 - 34) 정지영·양세정(2013). 경제적 은퇴준비행동의 영향요인: 세대간 자산이전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7(1), 199-219,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 35) 조병은(2003). 노모부양과 재산상속에 대한 한국인과 재미교포의 비교: 피부양모와 부양며느리/딸의 비교. 한국노년학, 23(3), 161-176. 한국노년학회.
 - 36) 조추용(2004). 노인이 가족에게 기대하는 부양 기대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4, 71-99, 한국노인복지학회.
 - 37) 통계청의 사회조사(2015).
 - 38) 하석철(2016). 모(母)와 성인자녀 간 장기적 호혜 관계 연구: 세대 간 돌봄 행위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39) 하석철·홍경준(2012). 부양 경험이 노후부양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부양동기에 따른 자녀동거 기대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3(3), 181-209.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40) 허경옥·유수현(2014). 부모의 경제자원이전과 상속이 가계경제구조, 재무구조, 재무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Financial Planning Review, 7(2), 95-120. 한국FP학회.
 - 41) 홍공숙·김순미·김연정(1995). 미국노인의 유산상속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2), 45-55, 한국가정관리학회.
 - 42) 홍두승(2004). 사회조사분석(3판). 서울: 다산출판사.
 - 43) 홍두승·서우석·이기홍·이지연(2005). 한국인의 직업의식 구조: 예비적 고찰.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44) 황남희(2012). 비시장노동과 세대간 이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45) Power, A.(2010). Landscapes of Care: Comparative Perspectives on Family Caregiving. Burlington, VT: Ashgate.
 - 46) 네이버사전. <http://dic.naver.com/>
 - 47) 머니투데이(2016.09.14.) 부모 많이 찾아 뵈 효자, 재산분할 때 웃는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091300194644028>
 - 48) 한경Business[big story] (2016.06.07.). 부모-자녀의 상속 ‘동상이몽’.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50&aid=000041096&sid1=001>

- 투 고 일 : 2016년 12월 1일
- 심 사 일 : 2017년 1월 4일
- 게재확정일 : 2017년 2월 17일